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CONTENTS

I. 부천시 생활임금제 개요	04
II.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06
III.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방법	10
IV. 생활임금 적용 모니터링	14
부록 01 Q&A	17
부록 02 통상임금	19
부록 03 부천시생활임금조례	21
부록 04 지자체별 생활임금 현황	24
부록 05 2022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	25



부천시 생활임금제 개요

1. 개념과 목적

- 생활임금은 저임금 해소와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역의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제도임.
- 생활임금제는 전국적으로 70여개의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생활임금 결정 방식, 금액, 적용 대상 등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다름.
-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의해 2013년 12월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4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음.

2. 추진근거

부천시생활임금조례(2013.12.12. 제정)

3. 적용범위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3조(적용대상)

- 부천시 소속 근로자
-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4. 생활임금 산입항목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상)

-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연장근로 등 가산임금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
- **통상임금의 요건** :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통상임금 해당금액** : 기본급, 급식비, 정기상여금, 기술수당,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

5. 추진경과

2011. 12. 20.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제안으로 노사민정 본회의 안건 상정
2012. 4월	'생활임금조례 추진위 구성' 실무협의회 의결
2012. 5월	'생활임금조례 추진위 구성 및 사업추진' 본회의 의결
2012. 7. 11.	1차 추진위, 생활임금의 목적과 지역차원에서의 의미 논의
2012. 8. 7.	2차 추진위, 조례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범위 및 내용 검토
2012. 9. 11.	3차 추진위, 생활임금에 담아야할 내용 논의 (외국사례 참조)
2012. 10. 16.	4차 추진위, 현행법 내 제정 가능한 조례 논의 (법률검토 요구)
2012. 11. 13.	5차 추진위, 생활임금 구체화 (지자체 예산지원범위 설정)
2012. 11. 27.	6차 추진위, 부천시의회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 합의
2013. 2. 1.	7차 추진위, 부천시 및 소속 근로자로 제한하는 생활임금 수정안 마련
2013. 6. 17.	생활임금제도화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 개최 (법적 쟁점)
2013. 10. 25.	부천시의회 생활임금조례 의결 (경기도 재의 요구)
2013. 11. 13.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재의 (경기도 재의 요구 수용)
2013. 12. 12.	부천시의회(강동구/안효식) 조례 재의결 (28명 중 24명 찬성), 조례 제정
2014. 1. 20.	경기도 재소 포기
2014. 2. 18.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 의결
2014. 4. 1.	전국 최초 노사민정 합의로 '생활임금조례' 시행
2018. ~ 2020.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까지 전면 확대(순수시비 재원 임금 근로자)
2020. 8. 18.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전면 개정, 적용대상 확대
2021. 1월~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까지 전면 확대(국도비 재원 임금 근로자 전면 확대)

6. 생활임금 시행절차

생활임금 실태조사	4~6월	생활임금위원회 부천시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 생활임금 적용현황 파악 • 지역 특성 고려, 수준 및 범위 검토
생활임금 결정·제안	7~8월	생활임금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결과기반 소요예산 산출 • 차년도 생활임금 결정제안
생활임금 심의·확정	8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제안된 차년도 생활임금 심의·확정

※최저임금 결정 후 60일 이내 결정·고시

결정 고시	9월	부천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협의회 확정된 차년도 생활임금 고시
생활임금 편성	9~11월	해당부서/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고시된 차년도 생활임금에 따른 적용대상자 선정, 예산 편성
생활임금 적용	차년도 1~12월	해당부서/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대상 근로자 생활임금 지급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I. 연도별 결정기준 및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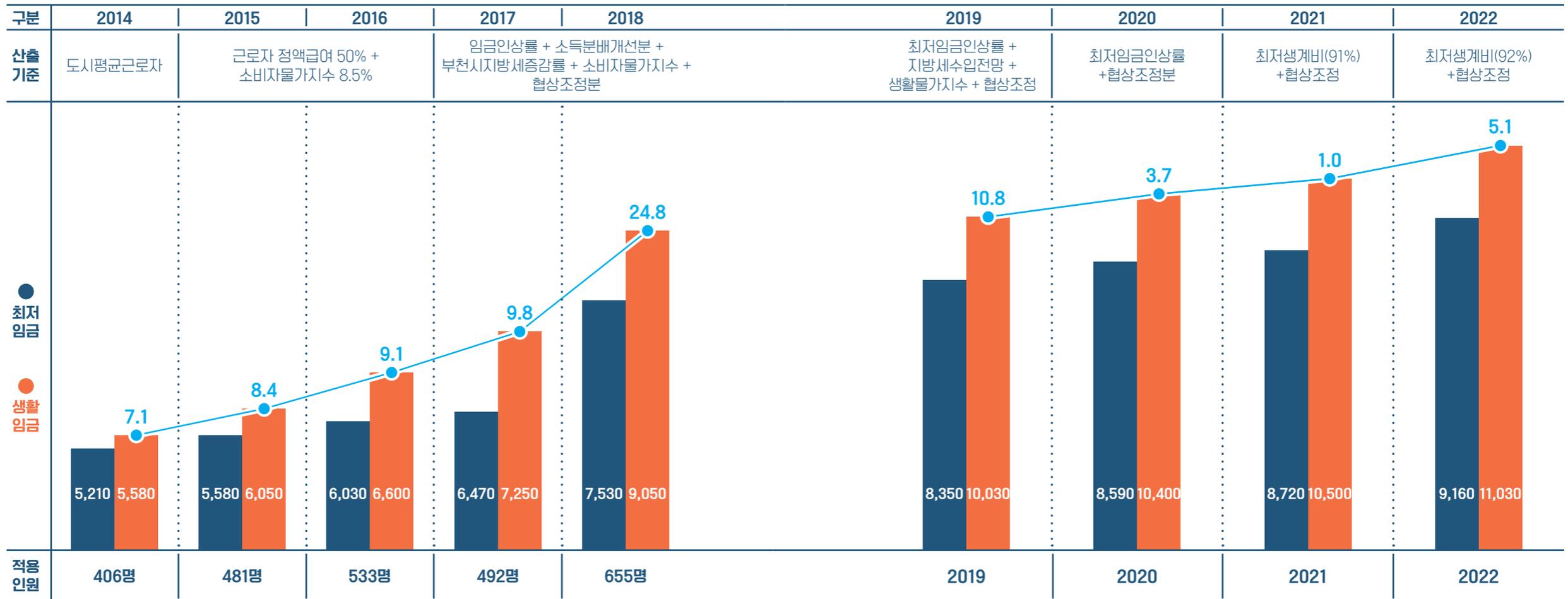
(단위: 년/원/%)

연도	최저임금	생활임금				결정고시
		시급	월급(209시간 기준)	인상률	심의확정	
2014	5,210	5,580	1,166,220	7.1	2014. 2. 19.	-
2015	5,580	6,050	1,264,450	8.4	2014. 8. 21.	-
2016	6,030	6,600	1,379,400	9.1	2015. 9. 8.	2015. 9. 15.
2017	6,470	7,250	1,515,250	9.8	2017. 9. 1.	2016. 9. 5.
2018	7,530	9,050	1,891,450	24.8	2017. 8. 23.	2017. 9. 14.

(단위: 년/원/%)

연도	최저임금	생활임금				결정고시
		시급	월급(209시간 기준)	인상률	심의확정	
2019	8,350	10,030	2,096,270	10.8	2018. 8. 22.	2020. 8. 29.
2020	8,590	10,400	2,173,600	3.7	2019. 9. 9.	2019. 9. 17.
2021	8,720	10,500	2,194,500	1.0	2020. 8. 24.	2020. 9. 4.
2022	9,160	11,030	2,305,270	5.1	2021. 8. 12.	2021. 9. 3.

(단위 : 년/원/%)



*인상률: 연도별 생활임금 인상률

II. 2022년 생활임금 결정

1.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2. 부천시 생활임금액 결정

시급 11,030원
월급 2,305,270원

(월 209시간, 주휴 8시간 포함)

3. 정책목표 : 2021~2030년(10개년) 최저생계비 3인가구 기준 100% 달성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달성률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93%		96%			99%				

《참조》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7~8월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수준으로서 개인회생 등의 기준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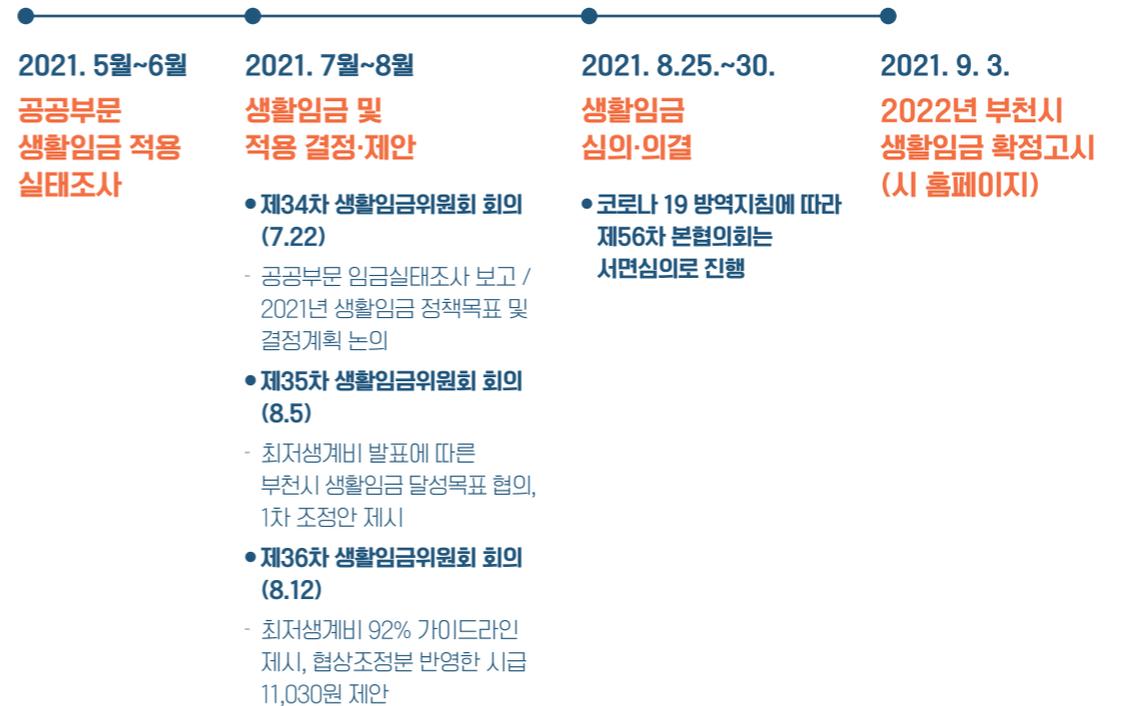
4. 산정근거 : 최저생계비 92%(11,078원) + 협상조정분(-0.6%, -48원)

2022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월2,516,820)의 92% 달성 목표

협상조정분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민간영역과의 격차와 부천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5. 생활임금 산입항목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본 책자 19페이지 참조)

6. 결정고시 절차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방법

I. 생활임금 적용 대상

1. 적용대상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따른 근로자에 동일 적용

- ① 부천시 소속 근로자
- ②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③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 ※인건비 재원구분(국/도/시비) 및 고용형태(상시/일시) 등 차별폐지

《참조》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근로자
2.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

《참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거주외국인·보훈대상자·근로자 및 일자리 지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청소·재활용·하수 및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도서관·자연생태공원 및 공원·녹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2. 제외가능대상

- ①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에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근로자
- ②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사업*, 부천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

*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란 취업 계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업 및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경과적인 일자리를 제공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말함

II. 생활임금 적용 방법

1. 임금항목에 따른 생활임금 차액 보전

※부천시 생활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액인 ‘순생활임금’을 시에서 보전하는 형식이므로,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 계산이 매우 중요함.

1) 임금항목이 ‘기본시급’만 있는 경우

구분	급여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	비고
	급여액	적용여부		
기본시급	9,160	○	1,914,440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 시급 9,160원(최저임금)인 경우 생활임금과 차액은 1,870원임
11,030원 - 9,160원 = 1,870원을 생활임금 항목으로 편성
- ※임금과 연동되는 4대 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등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

2) 임금항목이 '기본급 + 각종 수당'인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 지급하는 경우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

구분	급여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	비고
	급여액	적용여부		
기본급	9,160	○	1,914,440	
교통비	1일 3,000	○	66,000	
		X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 (통상임금 X)
가족수당	50,000	○	50,000	
		X		가족수에 따라 지급 (통상임금 X)
급식비	130,000	○	130,000	정액지급 (통상임금 ○)
		X		

통상시급 산출

· [(기본급×209) + 통상임금 해당 수당] ÷ 209시간
 = (9,160원×209) + 130,000원 = 2,044,440원 ÷ 209 = 9,780원(원단위절사)

생활임금 적용

· 11,030원 - 9,780원 = 1,250원을 생활임금 항목으로 편성
 ※ 임금과 연동되는 4대 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등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함

2. 시급 산출 방법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 중 통상임금 파악 후
 산정기준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산출

1)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 : 월209시간
 · (8시간×5일) + 8시간(주휴) = 주48시간
 · 주48시간 × 4.345주(월 평균 주수) = 월209시간

통상임금(월 기본급+월 고정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산출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 발생)

《 예시 1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통상임금 1,163,155원인 근로자

① 실근로시간 : 1주 16시간 × 4.345주(1달 평균 주수) = 69.44 시간
 ② 주휴 : 16시간/40시간×8시간 = 3.2 시간×4.345주 = 13.88 시간
 → 주40시간 근로자에게 주8시간 주휴 부여를 기준으로,
 1주 00시간 근로자의 주휴는 00시간/40시간×8시간의 산식임.

- 소정근로시간 ① + ② = 83.32시간
 - 월 기본급 1,111,155원 + 고정수당 52,000원 = 1,163,155원
 → 시급 : 1,163,155원/83.32시간 = 13,960원

《 예시 2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 통상임금 900,000원인 근로자

① 실근로시간 : 1주 27.5시간 × 4.34주(1달 평균 주수) = 119.35 시간
 ② 주휴 : 27.5시간/40시간×8시간 = 23.87 시간

- 소정근로시간 ① + ② = 143.22시간
 - 월 기본급 870,000원+ 고정수당 30,000원 = 900,000원
 → 시급 : 900,000원/143.22 시간 = 6,284원

1주 15시간 미만 근무(주휴 미발생)

《 예시 1 》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0시간, 통상임금 400,000원인 근로자

① 실근로시간 : 1주 10시간× 4.34주=43.4 시간
 ② 주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 없음

- 월 소정근로시간 = 43.4시간
 - 월 기본급 = 400,000원
 - 시급 = 400,000원/43.4시간 = 9,217원

생활임금 적용 모니터링

I. 예산 운영 관련 사항

생활임금 예산 운영 절차

생활임금 결정 제안 8월 중순, 심의의결 8월말, 결정고시 9월 이후
생활임금 적용자 근무 기관과 해당 부서는 생활임금 소요액 산출하여 본예산 편성

생활임금 부족분 예산 운영 절차

- 생활임금 적용 대상 부서에서 생활임금 보전수당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
- 출자·출연기관은 기관 자체 예산(출연금 등)으로 '생활임금 보전수당' 총당 검토

II. 공공부문 임금실태 조사

1차 실태조사 (일자리정책과)

- 목적 : 생활임금 적용실태 파악 및 차년도 생활임금액 결정을 위한 예산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적용범위 : 부천시 소속,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천시 사무의 수탁기관(민간위탁) 근로자
- 조사기간 : 3월

공문 시행	3월 1주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부천시 해당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발송		
조사지 작성	3월 2주	•출자출연기관 부천시 사무의 수탁기관
취합	3월 3주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부천시 해당 부서
결과분석	3월 4주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2차 실태조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 1차 실태조사시 누락 기관 및 조사지 작성오류 기관 대상 현장 조사 실시
- 민간위탁 기관 근로자 대상 생활임금 적극 홍보 및 미지급 건에 대한 신고 접수
- 조사기간 : 4월

III. 생활임금 미지급 신고

생활임금신고센터(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시 생활임금 관련 문의, 미적용사례 접수

- 유선 032-322-3814
- 팩스 032-611-3813
- 이메일 bunosmj@gmail.com
- 홈페이지 www.bcnsj.org/

《참조》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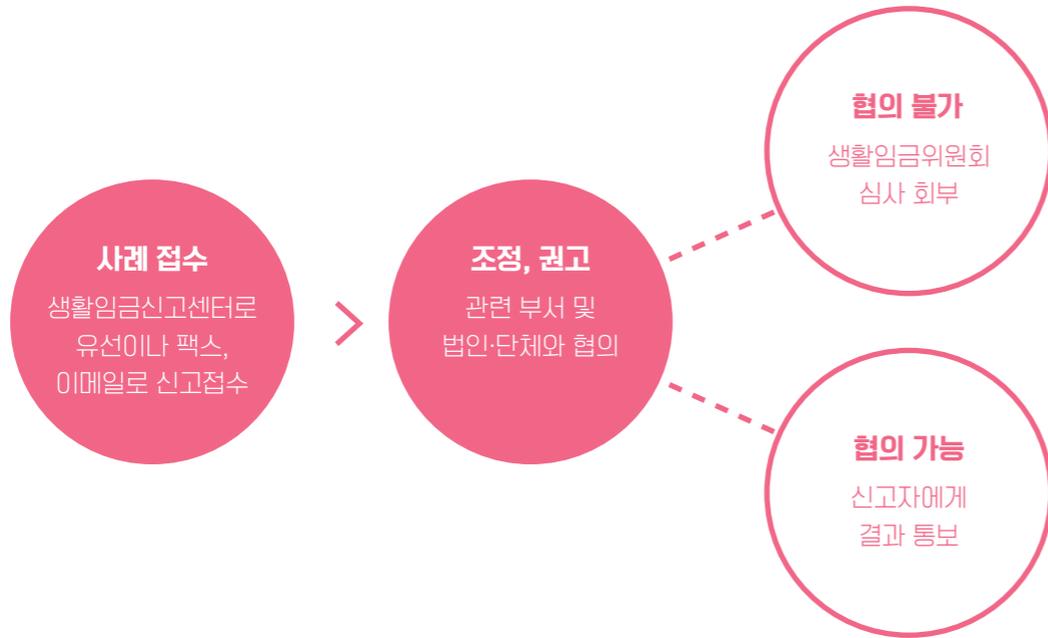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 ① 시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② 운영부서는 시 노사협력 업무 담당부서 또는 협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 ③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④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 ⑤ 시장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신고처리 절차



생활임금계산기

- 홈페이지 > 메인화면 > 하단 생활임금 계산기

부록 Q&A



Q 생활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도와는 별개로 각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전국 70여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3조에 의해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Q 민간위탁 기관 종사자 적용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A 부천시 사무를 위탁받고 있는 기관 전체로 보며, 그 적용 대상자는 부천시 사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나 시비·국도비 재원구분 등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로 한다. (부록_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3조 적용 참조)

-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사무 기관은 모두 해당
- ※ 단 부천시 사무 위탁기관이더라도 ①자체 사업비를 투입, ②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해 한시적 경과적 일자리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와 기준은?

A 부천시 생활임금에서 정의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급여의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으로 한다. (부록_통상임금 참조)

-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며,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
- ※ 직책수당 : 직급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봄
- ※ 가족수당 : 직원 가족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보며,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음.
- ※ 상 여 금 :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는 지급시기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임금 성격으로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등 지급당시 기준으로 재직자 뿐 만 아니라 퇴직시에도 1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임금에 포함함.
-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음

Q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다시 써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함. 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생활임금 지급내용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임.

Q 사회복지사 등 자체 임금가이드라인이 있는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대상 여부

《 질의내용 》 복지관은 사회복지 인력 가이드라인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음. 호봉제는 장기근로 경력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생활임금으로 인하여 신입직원과 경력직 직원의 차이가 없어져 장기근로에 대한 의욕상실 및 근로자 간 임금 갈등 발생. 복지관 소속 전 직원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인지?

A 복지관은 부천시 사무 위탁기관으로 고용형태나 국고지원금, 순수시비 등 재원 구분없이 전체 다 해당되며, 당해연도 생활임금 지급해야 함. 2022년도 신규채용자 경우 시급 11,030원 이상 지급 하여야 함. 단 조례 제3조2항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됨

《 참조 》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②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근로자
 2.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

부록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해서 통상임금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복직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정기성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
 - *일률성 :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고정성 :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구 분	임금의 특징	해당여부
기본시급	• 기본급여	○
직무수당 (직책수당)	• 직책이나 직업상 수행한 사무에 대하여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급여	○
면허수당	• 근로실적과 관계없이 해당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위험수당		○
물가수당		○
기본시급		○
연월차수당	• 사용일에 따라 변동됨으로 통상임금에 해당안됨	X
연장근로수당	•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됨으로 통상임금에 해당안됨	X
상여금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X

부록 부천시생활임금조례

구 분	임금의 특징	해당여부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X
	• 최소한의 보장되는 성과급	○
교통비	•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월정액)	○
	•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	X
가족수당	•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X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
급식비	•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월정액)	○
	•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급식비	X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대부분 많음)	X
	• 특정시점이 되기전 퇴직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결정되어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근로자
 2.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근로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사용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⑤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8조(위원장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시의 재정상황,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 ③ 시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 후 60일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 ④ 생활임금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⑤ 위원회와 협의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 ① 시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② 운영부서는 시 노사협력 업무 담당부서 또는 협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 ③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④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 ⑤ 시장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록 지자체별 생활임금 현황

광역지자체

(단위 : 원, %)

시도	2021년	2022년	인상률(%)	시도	2021년	2022년	인상률(%)
서울	10,702	10,766	0.6%	경남	10,380	10,700	3.08%
 경기 	 10,540 	 11,141 	 5.7% 	전남	10,473	10,900	4.1%
인천	10,150	10,670	5.1%	세종	10,017	10,328	3.1%
광주	10,520	10,920	3.8%	전북	10,251	10,835	5.7%
강원	10,252	10,785	5.2%	제주	10,150	10,660	5%
충북		10,326	최초시행	대전	10,202	10,460	2.5%
충남	10,200	10,510	3%	부산	10,341	10,868	5.1%

* 생활임금제도 미시행 시·도(3) : 대구, 경북, 울산('21 조례제정)

경기도내 시·군

(단위 : 원)

시군명	2021년	2022년	시군명	2021년	2022년
수원시	10,150	10,220	군포시	10,150	10,410
고양시	10,140	10,410	이천시	10,000	10,400
용인시	10,290	10,820	오산시	10,000	10,190
성남시	10,500	11,080	하남시	9,800	10,150
 부천시 	 10,500 	 11,030 	양주시	9,750	10,250
안산시	10,000	10,500	구리시	9,640	10,150
화성시	10,000	10,600	안성시	10,000	10,350
남양주시	9,800	10,200	포천시	9,970	10,190
안양시	10,400	10,930	의왕시	10,150	10,350
평택시	10,060	10,400	여주시	9,790	10,000
의정부시	9,700	10,080	양평군	9,370	10,020
시흥시	10,000	10,500	동두천시	9,720	9,820
김포시	10,150	10,860	과천시	10,440	10,970
광명시	10,150	10,410	가평군	9,370	10,010
광주시	9,820	10,180	연천군	10,440	10,320
파주시	10,020	10,460			

부록 2022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부유형
경찰청	•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고용부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고용부	•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농식품부	• 식품산업인프라강화(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사업)	인턴형
문체부	•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인턴형
	•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사회봉사복지형
문체부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회봉사복지형
문체부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인턴형
문체부	•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지원)	인턴형
문체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공업무지원형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소득보조형
복지부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소득보조형
복지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인턴형
산림청	•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공공업무지원형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산림보호지원단)	공공업무지원형
산림청	•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산림청	•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산림청	• 임도시설(임도관리단)	공공업무지원형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부유형
산림청	•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공공업무지원형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인턴형
특허청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소득보조형
해경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해수부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바다환경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행안부	• 국가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사업,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인턴형
	• 국가기록물 정리(특수유형기록물정리사업)	인턴형
행안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인턴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인턴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포용형)	공공업무지원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혁신형)	공공업무지원형
행안부	• 지역방역일자리	소득보조형
환경부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소득보조형
환경부	•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상류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금강))	소득보조형
환경부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소득보조형
환경부	•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소득보조형
	•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소득보조형
	• 환경지킴이(5대강지킴이)	소득보조형
	• 환경지킴이(주민감시요원)	소득보조형
과기부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공공업무지원형
농식품부	• 가족위생방역지원(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가족방역)	공공업무지원형
문체부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장애인대체자료 위탁제작)	소득보조형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 (대학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등 지원)	공공업무지원형
특허청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수출기업의 지재산권 분쟁대응 경쟁력강화-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운영)	소득보조형
환경부	• 댐유지관리(드론기반 안전진단)	공공업무지원형
	• 댐유지관리(댐 유지관리 디지털화)	공공업무지원형

생활임금신고센터(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기준 등 문의, 미적용사례 접수 및 관련 신고

•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원미어울마당 4층)

• FAX 032-611-3813 • TEL 032-322-3814~5 • 홈페이지 www.bcsnj.org

